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- 26호

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

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1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(대표 발의자 : 이용수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이용수 의원, 김외식 의원**

3. **제안이유**

○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○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
○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○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등(안 제9조, 제10조)

○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(안 제11조, 제12조)

○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(안 제13조)

○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(안 제14조, 제15조)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: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"연구단체"라 한다)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옥천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2.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.
3.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옥천군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.

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등록 등)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취소)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,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
4.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연구단체 지원)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

2.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

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동참여 등)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 활동계획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,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

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)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연구단체 해산)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.

제15조(연구단체 등록부)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. 단체명칭 :
2. 설립목적 :
3. 단체 인적사항

성 명	소속상임위원회	서 명	비 고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옥천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의원 연구 활동계획서

「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의원연구단체명			
연 구 내 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 활동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단체 활동비	총 액	금 원(금 원)	
	산출내역		
정책연구 용역비	총 액	금 원(금 원)	
	용역목적		
	주요내용		
특이 사항			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옥천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

「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.

의원연구단체명		
변 동 의 원	당 초	의원
	변 경	의원
변 동 일 자	년 월 일	
변 동 사 유		
기 타		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옥천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

「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<table>
<tr><td>연구단체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연구주제
변경 내용</td><td rowspan="2">당 초</td><td>연구주제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구목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변 경</td><td>연구주제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구목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구활동계획
변경 사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연구방법 및
세부연구계획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구단체
활동비</td><td>총 액</td><td colspan="2">금 원(금 원)</td></tr>
<tr><td>산출내역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정책연구
용역비</td><td>총 액</td><td colspan="2">금 원(금 원)</td></tr>
<tr><td>용역목적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특기사항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옥천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5호서식]

연구 활동 결과보고서

「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○○년도 ○○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의원연구단체명			
연구내용	연구주제		
	연구목적		
연구 활동	집행내역	자료수집 및 조사비	금 원(금 원)
		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	금 원(금 원)
		전문가 활동 경비	금 원(금 원)
		기 타	금 원(금 원)
정책연구 용역	용역목적		
	주요내용		

붙임 1. 00년도 000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1부.
2.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.
3. 연구용역 보고서 1부.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옥천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연구 활동 심의결과 통보서

「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연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 결과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
연 구 주 제		
심의·의결 결과	내 용	
	결 과	

년 월 일

제 출 자 :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 (인)

옥천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7호서식]

연구단체 등록부

등록 번호	단체의 명칭	회원수	대표자성명	회원성명	등록일	등록취소일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　례　명 :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